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26

발의연월일: 2020. 6. 25.

발 의 자:윤한홍·한무경·강대식

이명수・홍준표・곽상도

태영호 · 김영식 · 이만희

권성동・강기윤・추경호

김기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과 가장 밀접한 민원사무 중 하나인 신고에 대하여 관리기관 등이 신고자에게 그 수리 여부를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신 고인이 해당 내용의 처리여부를 장기간 알 수 없거나, 수리 지연에 따 른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지연 사유를 통지하지 않을 경우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하는 규정을 두어, 공무원들의 소극적 업무처리 행태를 방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처리를 독려하고자 함(안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6항 신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산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광업시설 폐지신고의 경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업시설의 설치공사·변경공사·공사완료·폐지 신고,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해임 신고 및 광산안전관리직원 대리자의 선임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제4항 및 제1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제8조(광업시설 설치공사의 승인
등) ①・② (생 략)	등) ①・②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
	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광업시
	설 폐지신고의 경우 7일 이내)
	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
	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
	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
	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
	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u>것으로 본다.</u>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	제13조(광산안전관리직원) ①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 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 | 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 | 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 것으로 본다. | ⑦ ~ ⑨ (현행 제6항부터 제8 | 항까지와 같음)